

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9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강북지역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성북구에 설치 예정인 거점형 키움센터로 지역 내 중소규모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,

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·예·체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의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.

나.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돌봄 콘텐츠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역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
나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다. 위탁기간 : 5년(2022.5. ~ 2027.5.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10~20명 수준의 운영·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이에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축적된 현장경험 및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
마. 위탁사무 :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-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-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-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-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
바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 성북구 종암동 28-358
- 규모 : 지상 2층~지상 5층 / 면적 1,170.09m²
- 준공일 : 2022.5월(예정)
- 공간구성(안)

구분		공간용도	면적(m ²)	세부용도내용
키움센터 공간	지상5층	창고	73.32	옥상텃밭 연계 공간
	지상4층	사무공간, 다목적공간	365.59	사무실, 다목적 강당
	지상3층	PBL 공간	365.59	PBL실
	지상2층	놀이공간	365.59	안내, 쉼 공간(정적 공간)
성북구 사용	지상1층	-	329.68	-
	지하1층	-	498.07	-

- 조직운영(안) : 4팀, 14명(정원)

센터장(1)
운영총괄

행정운영팀(4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- 조직, 인사, 예산·결산, 지출, 총무 -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- 전기·통신·기계 시설물 유지보수, 차량운행

돌봄기획팀(3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기획, 개발 총괄 - 문·예·체 창의체험활동 기획, 개발 - 지역돌봄기관, 지역주민 지원콘텐츠 기획, 개발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

돌봄운영팀(3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·예술·체육, 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- 지역주민 대상 활동 운영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운영

돌봄연계팀(3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- 돌봄자원(인적·물적) 연계 및 인프라 구축 -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지원

사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'22년 소요예산(안) : 631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반영 예정

다. 합 의

○ '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'21.10.6.(적정)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심주현(☎ 2133-9511)